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"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"

보 도 자 료

보도	2021. 6. 21. (월) 조간	배포	2021. 6. 18. (금)
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이현덕 팀장(3145-8129), 서선무 조사역(3145-8526)

제 목 :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!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!

- '20년 중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11,188건 이용중지, 게시글 5,225건 삭제 의뢰
- 대부(대출)광고를 접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, 제도권 금융회사, 등록 대부업자 여부 등을 확인 후 거래할 필요

▣ **(적발·조치)** '20년 중 명함광고, 문자메시지,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8,937건을 수집·적발

*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, 감시시스템,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

○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**전화번호 11,188건의 이용중지** 및 **인터넷 게시글 5,225건의 삭제**를 관계 기관에 의뢰

▣ **(동향 및 대응 방안)** 최근 **금융회사 사칭**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, **메뚜기식 광고*** 성행,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**청소년까지 확대**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

*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후 변경

○ 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**감시시스템 고도화,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** 등을 추진할 예정

불법대부(대출)광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❶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·문자·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
❷ '누구나 대출', '신용불량자 대출'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
❸ 최고 이자율('21.7.7.부터 연 20%)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
❹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
❺ 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불법스팸)에 신고

⇒ 광고를 통해 대부(대출)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(fine.fss.or.kr)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

Ⅰ. 불법대부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

불법대부광고 대응 체계



❶ 불법대부광고 수집·적발 현황

□ 금융감독원은 **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, 감시시스템***, **한국인터넷진흥원**(KISA)**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**모니터링 실시**

* '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'은 '20.7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'20.9월부터 본격 가동
** 유관기관간 공조의 일환으로 '20.8월부터 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문자 정보 공유

○ '20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**불법대부광고는 298,937건**으로 전년(240,288건) 대비 **24.4% 증가**(58,649건↑)

- '20년 중 **감시시스템 가동, KISA와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**하였으나,

- 코로나19에 따른 **오프라인**(명함광고 등) **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·일반제보는 감소**

제보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수집·적발 현황

(단위 : 건, %)

구 분	'19년(A)		'20년(B)		증감(B-A)	
		비중(%)		비중(%)		증감율
불법대부광고 수집 건수	240,288	100.0	298,937	100.0	58,649	24.4
❶시민감시단 제보	217,916	90.7	159,916	53.5	△58,000	△26.6
❷일반 제보	22,372	9.3	17,316	5.8	△5,056	△22.6
❸감시시스템('20.7월~)	-	-	34,959	11.7	34,959	신규채널
❹KISA('20.8월~)	-	-	86,746*	29.0	86,746	신규채널

* KISA에 스팸신고된 문자메시지 건수 기준

❷ 불법대부광고 조치 현황

□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❶**전화번호 이용중지** 또는 ❷**인터넷 게시글 삭제** 조치를 **의뢰**

○ **[전화번호 이용중지]** '20년 중 **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1,188건의 전화번호**를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**

-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(13,244건) 대비 **2,056건 감소**(15.5%↓)하였으며, 이는 **오프라인 활동 위축**에 따른 **제보 감소**에 주로 기인

○ **[게시글 삭제]** '20년 중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**5,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** 의뢰

- 조치의뢰 건수의 감소(8,010건 → 5,225건, 34.8%↓)는 **제보 감소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***로 **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**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

* 메뚜기식 광고(단기간 노출 후 삭제)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움

불법대부광고 관련 조치의뢰 현황

(단위 : 건, %)

구 분	'19년(A)		'20년(B)		증감(B-A)	
		비중(%)		*비중(%)*		*증감율*
조치의뢰 건수	**21,254**	*100.0*	**16,413**	*100.0*	**△4,841**	*△22.8*
❶전화번호 이용중지	13,244	*62.3*	11,188	*68.2*	△2,056	*△15.5*
❷게시글 삭제	8,010	*37.7*	5,225	*31.8*	△2,785	*△34.8*

* 중복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, 조치의뢰 前 전화해지(결번) 또는 게시글 삭제 등으로 인해 불법대부광고 적발 건수와 조치의뢰 건수 간에 차이 발생

[참고] 보이스피싱 등 기타 불법행위 관련 조치의뢰 실적

◈ '20년 중 **불법대부광고 이외**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**전화번호 9,507건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글 6,521건 삭제 등을 관계 기관에 의뢰**

- **[전화번호 이용중지]** ❶보이스피싱 관련 9,390건, ❷통장매매광고 관련 117건
- **[게시글 삭제 등]** ❶무인가(또는 위장) 금융투자업자 관련 1,105건, ❷기타 불법금융광고* 관련 5,41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또는 게시글 삭제를 의뢰

* 통장매매, 작업대출,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, 개인신용정보 매매 관련 광고

Ⅱ. 불법대부광고 주요 특징 및 대응 방안

1 최근 불법대부광고 주요 특징

❶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 급증

□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**금융회사를 사칭**하여 대출 상담 명목으로 **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**

○ 해당 광고는 **금융회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,**

○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**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***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

* 이외에도 **❶미등록 대부행위, ❷중개수수료 편취, ❸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**

금융회사 사칭 불법대부광고 스팸 현황
('20.9월~'21.5월)



* KISA에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건수 기준

□ 특히,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하여 **무차별적이고 광범위**하게 **저인망식 유인행위**를 펼치고 있으며,

○ **'정책자금 지원 대출'** 또는 **'저금리 대환대출'**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**어려움을 악용**

❷ 규제 회피를 위한 메뚜기식 광고 성행

□ **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**를 단기간(약 2~3주)만 활용하는 이른바 **'메뚜기식 광고'가** 유행

○ 이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**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**으로 보이며,

○ **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**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**해지**되었거나, **게시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**하여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

❸ 불법 대부 유인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

□ 최근 SNS 위주로 **대리입금*** **광고가 성행**하는 등 **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**에게까지 확대

* 아이돌 굿즈,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행위(일명 '댈입' 등)

○ 대리입금은 주로 **10만원 미만의 소액건**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여 **청소년을 유인**하고 있으며,

○ **지각비 등의 명목**으로 **연이율 1,000%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**하고,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**불법채권추심**을 하는 경우가 많음

2 향후 대응 방안

□ 진화하고 있는 **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하여 **감시시스템 고도화,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** 등을 추진

○ **(감시시스템 고도화)**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**불법대부광고 적발율**을 높이고 **적시성 있는 조치를** 위하여 **AI로직**을 도입하는 등 **시스템 고도화 추진**('21.12월 완료 목표)

○ **(공조강화) 피해 확산 방지**를 위해 **유관기관**(방심위 · KISA · 금융회사 등)과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

-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**조치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,**
-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**금융회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**

○ **(금융교육 강화)**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**대응요령 등을 체득**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**금융교육을 강화***

* '20년 중 학교에 가정통신문 배포 안내, '대리입금', '개인정보 유출'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

Ⅲ. 대부(대출)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

☑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, 문자메시지, 팩스를 이용한 대부(대출)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

☼ **전화나 문자메시지, 팩스**를 이용한 대부(대출)광고의 경우 **금융회사** 또는 **공공기관**을 **사칭**하는 경우가 다수

- 이러한 대부(대출)광고를 접했을 때는 **가능한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,**
-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**대표번호로 직접 전화**하여 확인하거나, **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**하여 문의

※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하며, 휴대폰에는 '전화 가로채기 앱'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전화시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

☑ '누구나 대출', '신용불량자 가능' 등 비상식적 문구 또는 '급한불', '지각비'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세요

☼ 불법대부광고는 **상식을 벗어난 문구**('누구나 대출', '신용불량자 가능' 등) **또는 은어**('급한불', '지각비', '월변' 등)**를 사용**하거나 **감언이설로 유인**하는 경우가 대부분

- 이런 경우 **불법대부광고** 가능성을 의심하고, 반드시 **제도권 금융회사** 또는 **등록 대부업체 여부**를 확인

※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제도권 금융회사,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

불법대부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



☑ 법정 최고 이자율*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,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

*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%이며, '21.7.7.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는 연 20%를 적용

☼ **불법대부광고**는 법정 **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**하나, 실제 **선이자, 수수료** 등을 부과하여 **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**

- **이자율**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**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**하며,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**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**로 간주*

 * 단,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

- **연 이자**는 관련법상 **24%**('21.7.7.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연 20%)를 **초과**할 수 없으며, **초과 지급된 이자**는 무효로 **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** 가능

☑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(최고금리 초과, 불법채권 추심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」를 이용하세요

☼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**최고금리 초과 대출**을 받거나 **불법채권추심**에 시달리는 경우 **무료로 변호사의 도움**(채무자대리인 등)을 받을 수 있음

-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*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☎**1332**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(<붙임2> 참조)

 * www.fss.or.kr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

☑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, 지자체, 경찰, 한국인터넷진흥원(불법스팸) 등에 신고하세요

☼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**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**가 필요

-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**금융감독원·지자체·경찰, 한국인터넷진흥원**(불법스팸) **등에 신속히 신고***

 * (금감원)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(<붙임3> 참조)
 (한국인터넷진흥원) 불법스팸신고센터(spam.kisa.or.kr) → 불법스팸 → 스팸신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1 불법대부광고 주요 피해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

사례1 미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

관련 광고 및 피해사례

☑ 급전이 필요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민하던 중 **신용불량자**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A씨.

업자는 **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선이자로 30만원**을 공제하겠다며 **70만원만 지급**하였으며, 이후 A씨가 정해진 시기에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면서 A씨의 가족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자택을 방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



소비자 유의사항

☐ 대부업체와의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**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**(fine.fss.or.kr)에서 확인

○ 불법사금융은 **고금리 피해** 뿐 아니라 **불법채권추심, 개인정보 유출** 및 **보이스피싱 피해**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

사례2 대리입금 광고

관련 광고 및 피해사례

☑ 아이돌그룹 OOO의 상품을 사고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SNS 상에서 **대리입금**을 통해 소액을 간단히 빌릴 수 있음을 알게된 B씨.

B씨는 소액이라 부담이 없다는 생각에 여러 계정을 통해 돈을 빌렸지만 결국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, 대리입금 업자들은 부모님 및 지인들의 번호로 연락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



소비자 유의사항

□ **대리입금**('댈입' 등)은 **"수고비", "지각비"**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**지인간**의 **금전 거래**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음을 명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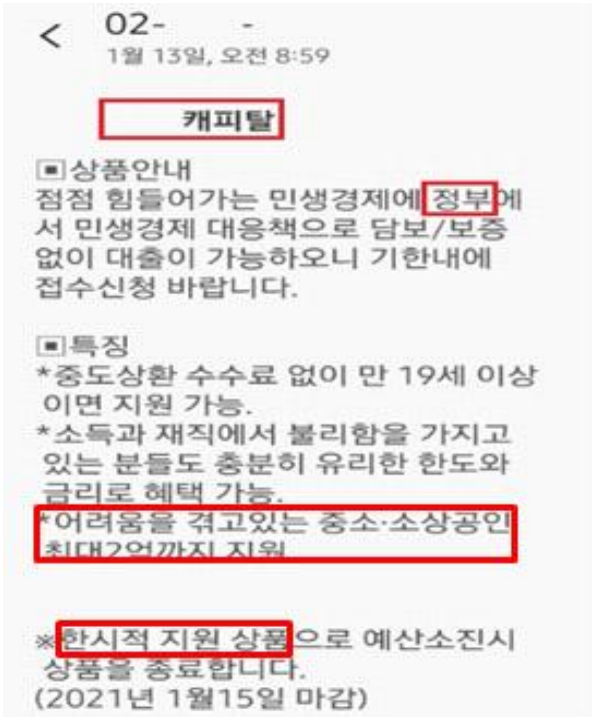
○ 실질적으로는 **소액 고금리 사채**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**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** 주의

사례3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광고

관련 광고 및 피해사례

☑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제도권 금융회사로 알려진 OO캐피탈로부터 **정부지원 자금**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광고를 받은 C씨.

해당 업체로부터 "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**대환대출**이 가능하다"는 안내를 받고 의심스러웠지만 인지도가 있는 OO캐피탈의 '**정부지원자금**'이라는 말을 믿은 C씨는 해당 업체가 전송한 url을 클릭한 후, 대출잔금이 있던 △△은행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대출금액을 상환함. 하지만 이미 url 접속을 통해 **전화가로채기 앱**이 설치되어 있었으며, 실제로는 △△은행이 아닌 보이스피싱 업체로 자금을 송금하여 피해 발생



소비자 유의사항

□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**대표번호로 직접 전화**하여 확인하거나, **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**하여 문의

○ 특히,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설치된 **전화가로채기 앱**을 통해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**유선전화를 활용**하거나 **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확인** 필요

붙임2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

1 제도권 금융회사,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

√ 파인(fine.fss.or.kr)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'파인'을 검색하여 접속

☞ '제도권 금융회사 조회' 또는 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를 클릭하여 확인



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

√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로 접속 후 '민원·신고' → '불법금융신고센터' → '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'



붙임3 불법대부광고 신고 방법

1 불법대부광고(명함광고, 문자메시지 광고)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

√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(www.fss.or.kr/s1332)으로 접속 후 '불법금융대응' → '제보신고' → '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'

* 명함광고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 등 증빙자료 필요



2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

√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로 접속 후 '민원·신고' → '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'

* 게시글 URL 및 관련 게시 내용을 캡쳐한 증빙자료 필요

